

2026년 화천군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 방지 및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2026년 화천군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화 천 군 수

□ 신청시기

-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어업, 양식업 등) : 2025. 11. 27.까지
- 접수처: 축산과 내수면팀으로 서면 제출

□ 신청서류

- 사업대상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공통사항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거주 어업인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해양레저 관광업 사업자

* 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 2026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수요조사 반영 결과: 화천군 대상자 2명

□ 신청자격 및 요건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거주지: 화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수산업경영경력: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 관광업 등 포함) 3년 이하의 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경영인 (예정자 포함)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제외

○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어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에 속하는 경우, '자조금 완납증명서' 를 제출해야 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양식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양식업 창업 후 당해 연도까지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

▶ 수산업경영경력(상세)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5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 (2025.1.1. 이후 등록자~2026년 예정자),
2년차(2024.1.1.~12.31. 등록자)
3년차(2023.1.1.~12.31. 등록자)

* 다만, 2025년 사업대상자로 20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6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사업자 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사업 선정 제외 대상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낙시 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330,765원	292,298원	342,861원

-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가구원 수에 대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자금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 지원금의 사용방법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 청년어업인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매월)

- * 보고서 및 사용 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 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 * 12월분 지원액의 지출잔액은 익월 사용 불가하여 12월분 지출잔액은 환수·반납 조치
- 물품 구매 시 월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 예) 1년차(지원단가 11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1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대상에 해당)
 - * 단, 종자(양식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은 제외
- 체크(직불)카드 사용시, 심야시간(오후11시~오전6시)에는 사용 자제
 - *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시간에 사용시, 사용목적 및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6촌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사업시행자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시행자는 제재 대상이 있을경우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 (15일 이내)부여
-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창업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수산업 창업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당해 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별지11호 제출 * 재해보험 가입기한 : 차년도 3월까지	미가입시 3개월 간 지원 중단 * 재해보험가입 예상금액이 3개월 간 지원 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 만큼 추가로 지원 중단
수산업경영 계획 이행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수산업경영 계획 변경(어업경영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성실 신고	제출 서류	수산업경영계획서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 점검	수산업경영이행실적 보고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 (월할)
지원금 성실사용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시점 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의무 수산업경영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수산업경영 종사 의무	실제 수산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수산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 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전업적 수산업경영 유지		-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수산업경영 포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수산업경영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금지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금지 * 단, 수산업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접수된 청년 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서면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 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 면접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사업 추진 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담당 과장)
 - * 외부 전문가는 수산업, 수산어촌, 귀어귀촌 분야 전문가 등 평가 해당지역 인원이 아닌 자도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
- 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1~5순위)와 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명부 작성

○ 추진 일정

- 2025. 11. 7. ~ 11. 27.: 서류 접수
- 2025. 11. ~ 12.내: 서면평가 및 면접 평가 실시
 - 이후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결과 송부(군 → 도, 12월), 사업시행(1월부터)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접수처 및 안내

- 접수처: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내수면팀
- 문 의: (033)440-2947

- 붙임 1. 사업시행지침(별지서식 포함) 1부.
2. 사업신청 관련 서식 각 1부. 끝.